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보호심판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 공공화를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확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함)의 보호,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도지사”로 변경된 데 따라 이를 해당 규정에 반영함(안 제5조의 2제3항·제4항, 제88조제3항)
- 임시조치 결정의 통지 상대방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된 데 따라 이를 그 통지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안

제10조제1항·제4항·제6항)

- 임시조치의 보호대상과 그 통지 상대방 및 그 변경 신청권자의 범위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선임 시 그 피후견인의 범위가 “피해아동등”으로 확대된바, 그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 보호처분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기존 집행감독에 관한 규정 등에 반영함(안 제54조제1항·제2항, 제89조제2항, 제90조)

4.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아동보호심판규칙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88조제3항 중 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피해아동등의 법정대리인”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7조제1항·제3항, 제33조제2항, 제44조제1항 본문 중 각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6항 중 각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각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조사관”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집행상황 조사를 명받은 조사관”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조사관”을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로 한다.

제90조 제목 중 “이행실태”를 “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같은 조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으로 한다.

제91조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아동·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 행위자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관은 행위자·피해아동 및 가정구성원

-피해아동등-----

-----.

③ (현행과 같음)

④ -----

-----피해아동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

⑤ (현행과 같음)

⑥ -----

-----피해아동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
-----피해아동등-----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시조치와 동시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하 ‘임시후견인’이라고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판사는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임시후견인, 임시후견인이 될 자 등의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 등 상당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

⑤~⑧ (생략)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① 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의 신청 및 청구는 서면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아동등-----

-----.

④ -----

-----피해아동등-----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

⑤~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① 법 제21조제3항-----

으로 하고 그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아동·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제44조(결정서의 등·초본의 청구)

① 행위자·보조인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4조(집행상황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

② -----

-----피해아동등-----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결정서의 등·초본의 청구)

① -----피해아동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54(집행상황보고)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
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

있다.

②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② (생략)

③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연고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연고자 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생략)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이행실태의 보고) 법 제53

--.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집행상황 조사를 명받은 조사관-

-----.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지사-

-----.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

-----.

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

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변경·연장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한 사항의 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변경·연장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679